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5일, 강경숙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4.12.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교육위원회(2025.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경숙의원)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

· 경력·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대학 교원 채용시, 임용권자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임용권자에게 서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임용권자의 서류 검증의무는 시행령상 채용후보자의 의무에 대한 검증의무라고 볼 수 있는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검증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의 체계정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교사에 대한 신규채용과 같이 대학 교원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도 법률에 규정을 하거나, 혹은 임용권자의 검증의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는지 검증할 의무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허위 기재가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학 교원 임용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규정을 두는 것은 대학 교원 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자이며,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을 치르는 교사들과 달리 대학 교원은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임용권을 가짐. 이를 고려했을 때, 허위 기재하여 임용이 취소된 자가 모든 대학에 5년간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 대학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임.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할 것을 규정¹⁾하고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립대학 교원은 개정안의 제11조의5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대학 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것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인해 임용 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 금지”하는 사항은 임 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삭제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1조의5는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중요

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허위 사실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²⁾ 등을 참고하여 요건을 보완하는 한편, 임용권자의 임용취소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외국법자문사법」 제7조(자격승인 취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학 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것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허위 기재로 인해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11조의5제2항 삭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3제3항 중 “해당”을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으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증하여야 한다”를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류 검증”을 “서류검증”으로 한다.

안 제11조의5제1항을 제11조의5로 하고, 안 제11조의5제1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 ② (생략)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③ <u>임용권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증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 ----- <u>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제2항 및 제3항----- -----심사방법, 서류 검증----- ----- -----.</u>	④ ----- ----- ----- ----- <u>서류검증</u> ----- ----- -----.
<신설>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u>임</u>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u>용권자는 대학의</u>	-----
<u>교원으로 임용된</u>	-----
<u>사람이 학위, 경력</u>	-----
<u>및 자격 등 대통령</u>	-----
<u>령으로 정하는 중</u>	-----
<u>요한 사항을 고의</u>	-----
<u>적으로 허위 기재</u>	-----
<u>한 사실이 있는 경</u>	-----
<u>우 그 허위 기재가</u>	-----
<u>임용에 결정적인</u>	-----
<u>영향을 미쳤다고</u>	-----
<u>인정하는 때에는</u>	<u>인정되는</u> -----
<u>대학인사위원회의</u>	-----
<u>심의를 거쳐 임용</u>	-----
<u>을 취소할 수 있다.</u>	-----.
<u>② 대학의 교원으</u>	<u><삭 제></u>
<u>로의 임용을 위하</u>	
<u>여 제출한 서류에</u>	
<u>학위, 경력 및 자격</u>	
<u>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중요한 사</u>	
<u>항을 고의적으로</u>	
<u>허위 기재하여 제1</u>	
<u>항에 따라 임용이</u>	
<u>취소된 사람은 취</u>	
<u>소된 날부터 5년간</u>	

	<u>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대학 교원 임용 부정 행위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 례) 제11조의5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서류 허위 기재로 임용 이 취소된 경우부 터 적용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u> <u><삭 제></u>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5제3항부터”를 “제11조의6제3항부터”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및”을 “, 서류 등의 검증 및”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의5를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u>제1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u>)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 ----- ----- ----- <u>제11조의6제3항부터</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 ② (생략)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u>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④ 제2항 및 제3항에</u> ----- ----- -----, <u>서류 등의 검</u> <u>증 및</u> -----

